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권사무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국가인권교육원의 소속 변경 등>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99호)

2026.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5

1. 인권사무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 5

2. 국가인권통계 법적 근거 마련 ····· 9

3.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14

4. 국가인권교육원의 소속 변경 ····· 17

5. 조사대상 인권침해 범위 확대 ····· 21

6. 부 칙 ····· 27

※ 참고자료 ····· 28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남근·권향엽·김 윤·남인순·박지원·이용선 임미애·정일영·진성준·최민희·허성무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6. 2. 24.

3. 회 부 일 : 2026. 2. 25.

※ 의안번호 : 16999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5개의 인권사무소와 1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음. 인권사무소는 관할구역 내 인권상담, 경찰·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각급학교·구금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조사·구제, 인권교육, 인권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인권사무소를 통해 지역민의 인권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전국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사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인 「국가인권위

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정부의 직제 개정만으로도 사무소의 폐지가 가능하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권사무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인권의 저변화와 전국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가인권통계는 인권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국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이 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큼. 인권위는 지난 5년 이상 국가인권통계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400개 이상의 인권통계를 생산했음. 현재까지 작성·공표된 인권통계는 현행법 제19조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조문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나, 국가인권통계를 명확히 규율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를 원활히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재 국제인권규범의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관계기관등이 국제인권기구등에 제출한 자료, 국제인권기구등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받은 권고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없는바, 이러한 관련 정보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인권규범을 대중

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함.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해 2021년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 승인 및 관리전환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인권교육원 설립사업을 추진하였음.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속기관(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제26조의2)이 의결되어, 2025. 6. 4.부로 시행되었음.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성장관리권역 내에 인구집중유발시설('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포함)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음.

인권위 진정이 아닌 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 신청이 가능하나 다수의 선행연구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사회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은 매우 소극적임. 비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구제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인권위의 조사대상에는 사회권이 포함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UN사회권규약위원회 역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법제를 개선하여 국내적인 사회권구제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사회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해당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인권규범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고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인권사무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인권사무소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인권사무소의 설치) ① 위원회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인권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으로 5개의 인권사무소(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를 두고 있고,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별도로 두고 있음.[1)]

인권사무소는 관할구역 내에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상담 및 진정의 접수,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1)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수행하고 있음.[2)]

[표-2]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 현황

구 분	위 치	관할구역	개소시기	정 원
부산인권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2005. 10.	9명
광주인권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북특별자치도	2005. 10.	8명
대구인권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2007. 7.	9명
대전인권사무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2014. 10.	9명
강원인권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2017. 6.	5명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인권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019. 10.	3명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2)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인권사무소)** ① 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인권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2.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상담 및 진정의 접수
3.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위원장이 지정하는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
6.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7.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인권팀) ① 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

②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제주인권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인권팀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로 하고, 제주인권팀장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장으로 한다.

제12조(관할구역)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안은 인권사무소의 설치 근거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두는 경우 정부의 직제 개정만으로도 인권사무소의 폐지가 가능한다는 인식하에, 인권사무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그 규범력을 강화하고 인권사무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17대 국회에서 정부가 사무처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3]을 제출(2005. 2. 17.)하였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무처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하였으므로,[4] 개정안 심사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제1항[5]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최초 2개에서 현재 5개(인권팀 포함 시 6개)로 인권사무소가 지속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직제 개정만으로 인권사무소를 폐지

---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사무처)**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방에 사무처 산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법제사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171379호)」, 2005, p.15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2. 국가인권통계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가인권통계 작성·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국가인권통계 조사의 외부기관 의뢰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3(국가인권통계) ① 위원회는 국내 인권상황과 그 변화를 파악하고 인권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통계 작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가인권통계 조사를 인권에 관한 전문성, 조사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통계 구축 및 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통계 작성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으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과 국내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지표 개발을 위하여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4호[6]를 근거로 2019년부터 매년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현재 수행 중인 국가인권통계 작성 업무 수행 주체, 작성 방식 및 현황, 공표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계약 방식으로 선정[7]한 후, 선정된 연구용역 수

---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7) 국가인권통계 연구용역 현황(2019년~2025년)

(단위: 천원)

구분	실태조사명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2019년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19)	2019.2.28.~12.13.	(사)한국삶의질학회	99,785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2019.2.25.~11.29.	통계청(통계대행과)	500,000
2020년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20)	2020.3.6.~12.14.	(사)한국삶의질학회	99,978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2020.2.24.~11.30.	통계청(통계대행과)	580,000
2021년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21)	2021.3.23.~11.30.	(사)한국삶의질학회	99,079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2021.4.26.~11.30.	㈜한국리서치	540,000
2022년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22)	2022.3.21.~11.30.	(사)한국삶의질학회	99,240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2022.3.29.~11.30.	㈜한국리서치	485,000
2023년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23)	2023.4.26.~11.30.	(사)한국삶의질학회	97,921
	2023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2023.4.6.~11.30.	㈜한국리서치	490,000
2024년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24)	2024.4.15.~11.30.	(사)한국삶의질학회	99,500
	2024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2024.4.16.~11.30.	㈜한국리서치	490,000
2025년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25)	2025.4.9.~11.30.	(사)한국삶의질학회	99,500
	2025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2025.4.11.~11.30.	㈜한국갤럽조사연구소	490,000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행기관이 ① 정부기관 등에서 생산한 기존 통계 및 행정자료를 가공하여 얻은 통계 등과 ② '인권의식실태조사'[8]를 통하여 신규로 생성 또는 갱신된 통계 등을 검증·분석하여 인권영역·권리유형·인권주제별로 매년 380개~470개 정도의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작성된 국가인권통계를 매년 간행물(「한국의 인권통계」) 형태로 발간하고 해당 간행물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하고 있음.

[표-4] 국가인권통계 작성 현황(2019년~2025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81개	460개	474개	467개	468개	472개	475개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한편, 특정 통계의 조사·작성 등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결핵예방법」(결핵통계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의 통계), 「고등교육법」(교육통계조사), 「고용정책 기본법」(고용 관련 통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등 여러 법률에서 특정 정책 목표의 달성이나 제도의 수립·평가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의 수집·조사 또는 작성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8)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에 해당함.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은 국가인권통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재 수행 중인 국가인권통계 작성 방식과 작성 업무 수행 주체를 감안하여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국가인권통계 조사의 외부기관 의뢰 근거[9]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국가인권통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게 되면 국가인권통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작성이 가능하게 되어 국가인권통계의 정확성·일관성·신뢰성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법률에서 특정 목적의 통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10]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국가인권통계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

---

9)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행 업무로 실태조사와 평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해당 실태조사와 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인권통계 작성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의견을 제시하였음.

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11]

11) 국가인권통계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134	서미화의원	국가인권통계의 법적 근거 신설

3.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개정안은 국제인권규범의 내용 등을 수집·정비·보존하기 위한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표-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의 내용, 관계기관등이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국제인권기구 등에 제출한 자료, 국제인권기구 등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7호 및 제9호[12]에 따라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4년 3월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에서는 주요 국제인권규범(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일반논평, 개인통보, 국제인권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국영문으로 일반에 제공하고 있음.[13)]

[표-6] 국제인권정보시스템 초기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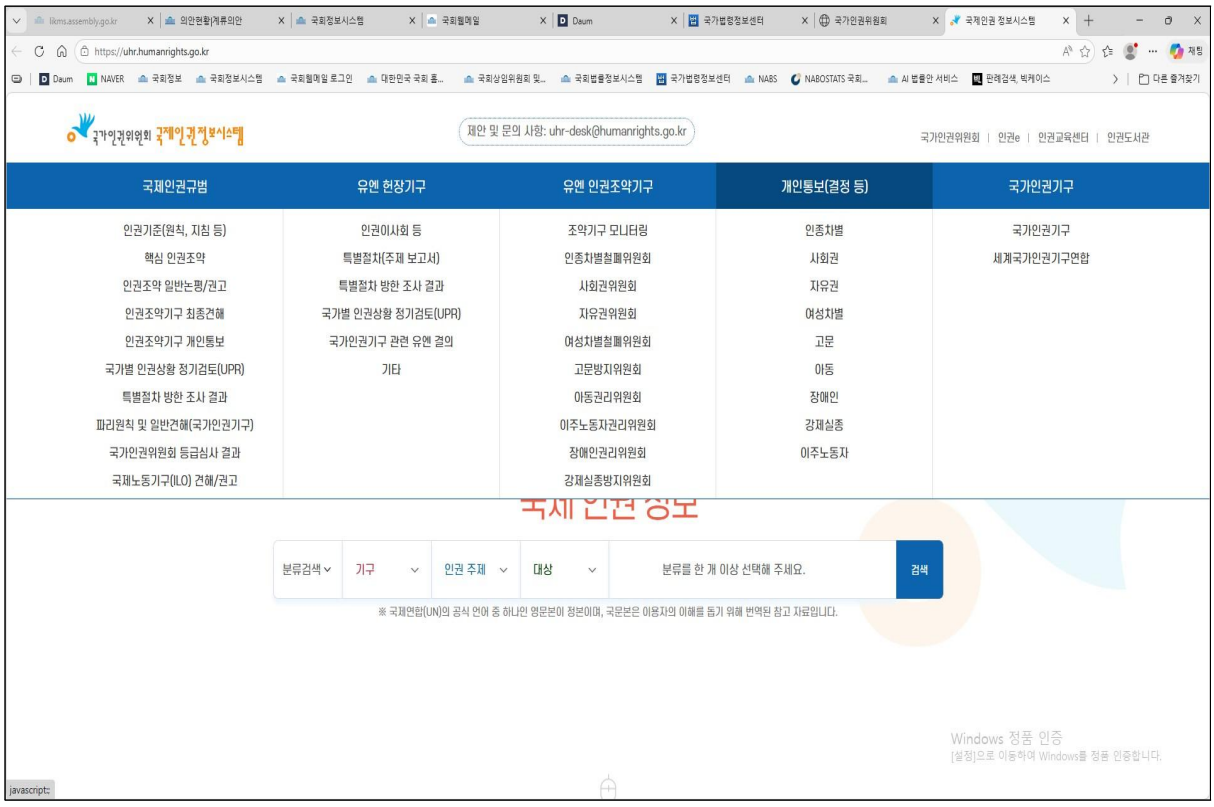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정사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13) 국제인권정보시스템 제공 자료 현황(2026. 2. 6. 기준)

구 분	국제인권규범	유엔현장기구	유엔인권조약기구	개인통보(결정 등)	계
자료 수(국영문)	904	2,205	342	117	3,568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을 2019년에 구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3[14]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구축 목적, 실제 운영 상황,[15] 안정적 운영의 필요성과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관련 시스템의 법적 근거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

14) 2024. 12. 3. 공포·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신설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5)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2025년 접속 건수는 449,028건임.

4. 국가인권교육원의 소속 변경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을 사무처 하부조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16]

[표-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①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둔다. ②·③ (생 략)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생 략)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① ----------사무처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부터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 3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2025년 12월 준공하여 2026년 4월 국가인권교육원을 개원하였음.[17]

---

1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2025. 6. 4. 시행(2024. 12. 3. 공포)되었는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하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은 현재 개정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2026. 4. 14. 개정·시행된 상황임.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2022년 6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조건부의결(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청사를 직제상 소속기관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협의한 결과, 국가인권교육원의 청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에서 신설·증설 등이 금지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에 해당하여 수도권에 신설할 수 없으나,[18] 국가인권교육

17) 국가인권교육원 건축공사 추진 경과

○ 2019. 3. 용인시 (구)통관물류센터 부지 사용승인 예약신청
○ 2020. 12. 2021년도 기본설계비(226백만원) 예산 국회 의결
○ 2021. 1. ‘인권교육원 신축’ 총사업비 반영(11,479백만원)
○ 2021. 2. 국유재산 부지 사용승인(토지: 4,610㎡, 건물: 4,017.57㎡)
○ 2021. 8. 공공건축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 2021. 12. 기본설계 완료
○ 2022. 6.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의결
○ 2022. 12. 실시설계 완료
○ 2023. 1. 건축허가 협의 완료(경기도 용인특례시)
○ 2024. 2. 건설사업관리(감리) 및 각종 공사 계약 완료
○ 2024. 3. 인권교육원 건축공사 착공(기공식 3. 19.)
○ 2025. 12. 인권교육원 본공사 완료
○ 2026. 1.~3. 인권교육원 건축물 사용승인 협의(경기도 용인특례시)
○ 2026. 4. 인권교육원 개원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1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원의 조직 형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기관이 아닌 사무처의 하부 조직인 경우에는 그 청사의 신설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됨.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4월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사무처 하부조직으로 국가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는 직제 개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음. 해당 직제[19]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6. 4. 14. 공포·시행되었음.

---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 청사 또는 연수 시설의 신설·증설**을 말한다.

2. 공공 청사의 경우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성장관리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19)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협력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군인권보호국 및 **국가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9조의4(국가인권교육센터) ①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기획과·인권교육운영과 및 인권교육콘텐츠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안은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 형태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에서 사무처 하부조직으로 변경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국가인권교육원 청사의 신설 제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국가인권교육원의 개원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안이 입법화되기 전에 대통령령인 직제를 통하여 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5. 조사대상 인권침해 범위 확대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의 범위를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에 대한 침해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에 대한 침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표-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 1.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20]는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0조제1항제1호[21]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을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음.

즉, 현행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권) 중에서 자유권적 기본권(포괄적 기본권 포함, 재산권 제외)만 해당하고,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및 사회적 기본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표-9]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상 분류(제10조부터 제36조까지)

구 분	헌법상 기본권
포괄적 기본권	○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제11조: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 제12조·제13조: 신체의 자유권 ○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 제16조: 주거의 자유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구 분	헌법상 기본권
	○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18조: 통신의 자유 ○ 제19조: 양심의 자유 ○ 제20조: 종교의 자유 ○ 제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정치적 기본권 (참정권)	○ 제24조: 선거권 ○ 제25조: 공무담임권
청구권적 기본권	○ 제26조: 청원권 ○ 제27조: 재판청구권 ○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사회적 기본권	○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 제32조: 근로의 권리 ○ 제33조: 노동3권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제35조: 환경권 ○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 및 보건권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17년 10월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업무를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본질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22]

또한, 사회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여전히 미흡한 현실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복잡한 소송 절차나 비

22) 「사회권위원회 제04차 최종견해」, 2017, p.4

용 부담 없이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 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23]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인권침해의 범위를 사회적 기본권까지 확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에 대하여 조사·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인권 보장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당시부터 자유권적 기본권에 한정되었는데, 조사대상 범위는 제정 당시 입법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였음.

당시 조사대상을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 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한 인권'으로 하는 의원발의법률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 전반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법원, 검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여성부, 노동위원회, 감사원 등 기존의 국가기관과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24]되었고, 결국 조사대상을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으로 하는 제정안[25]

23) 이주영,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방향 토론」, 사회권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방향 간담회 토론자료, 2026, p.47
24)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법안 검토보고(이미경의원 대표발의)」, 2001, p.13
25) 정대철의원 대표발의안 및 이인기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

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제정 이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한정·유지되어 온 연혁적 의의와 제정 당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기구를 통한 비사법적 구제절차인 진정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로는 멕시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공화국, 필리핀, 나이지리아가 있음.[26]

둘째, 헌법재판소는 사회권의 보호영역을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개인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27]

'사회적 기본권(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이 국가에게 그의 이행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다른 과제보다도 사회적 기본권이 규정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우위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예산책정과정에서 반드시 우선적 이행을 요구할 수가 없다.……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

26)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 방안 연구-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2023, pp.151~163
27)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이 담고 있는 국가목표를 고려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음.[28)]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기본권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침해행위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조사를 통하여 실제적인 구제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8)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6. 부 칙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음.

[표-10] 개정안 부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 부칙은 개정안의 모든 조항이 ‘공포한 날’에 같이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9조의3 및 안 제21조의2의 경우 국가인권통계 구축·조사 방법 및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 시행 전에 위원회 규칙의 정비가 필요한 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1항[29]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조항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

29)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참고 인권영역 · 권리유형 · 인권주제별 통계 현황

□ 2019년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거버넌스	(37)	평등권	(7)	정치참여의 평등	7
		시민·정치적 권리	(30)	집회의 자유	2
				결사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1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1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19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3
				구제 및 면책 권리	3
사법정의	(67)	시민·정치적 권리	(67)	안전할 권리	51
				사생활 보호 권리	8
				공정한 재판 권리	4
				사법적 구제 권리	3
				임의 체포와 구금	1
물질적 생활수준	(2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4)	사회안전망 권리	18
				인권과 빈곤	6
주거와 교통	(35)	시민·정치적 권리	(10)	거주 및 이동의 자유	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5)	적절한 주거 권리	25
가족	(4)	시민·정치적 권리	(4)	가정폭력	4
노동	(68)	평등권	(29)	고용에서의 평등	17
				노동조건의 평등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9)	일할 권리	7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30
				노사관계 권리	2
건강	(54)	평등권	(7)	보건서비스의 평등	7
		시민·정치적 권리	(9)	생명권	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8)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13
				적절한 식생활 권리	6
				의료 접근권	15
				모성 및 아동 보호	4
교육	(32)	평등권	(5)	교육기회의 평등	5
		시민·정치적 권리	(4)	교육선택의 자유	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3)	교육받을 권리	23
문화미디어·정보	(39)	평등권	(23)	다양성 존중	23
		시민·정치적 권리	(–)	표현의 자유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6)	문화적 생활 권리	13
				정보 접근권	3
환경	(1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3)	쾌적한 환경 권리	11
				식수 및 위생 권리	2
가치와 의식	(8)			인권실태 평가	5
				인권 인식과 교육	3
합계					381

□ 2020년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거버넌스	(43)	평등권	(7)	정치참여의 평등	7
		시민·정치적 권리	(36)	집회의 자유	4
				결사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2
				양심의 자유	1
				종교의 자유	1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22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2
				구제 및 면책 권리	3
사법정의	(72)	시민·정치적 권리	(72)	안전할 권리	43
				사생활 보호 권리	12
				공정한 재판 권리	5
				사법적 구제 권리	7
				임의 체포와 구금	5
물질적 생활수준	(2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7)	사회안전망 권리	18
				인권과 빈곤	9
주거와 교통	(37)	시민·정치적 권리	(12)	거주 및 이동의 자유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5)	적절한 주거 권리	25
가족	(8)	시민·정치적 권리	(8)	가정폭력	8
노동	(77)	평등권	(32)	고용에서의 평등	20
				노동조건의 평등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5)	일할 권리	10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31
				노사관계 권리	4
건강	(64)	평등권	(7)	보건서비스의 평등	7
		시민·정치적 권리	(9)	생명권	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8)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15
				적절한 식생활 권리	8
				의료 접근권	18
				모성 및 아동 보호	7
교육	(36)	평등권	(5)	교육기회의 평등	5
		시민·정치적 권리	(8)	교육선택의 자유	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3)	교육받을 권리	23
문화미디어·정보	(51)	평등권	(31)	다양성 존중	31
		시민·정치적 권리	(1)	표현의 자유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9)	문화적 생활 권리	17
				정보 접근권	2
환경	(1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9)	쾌적한 환경 권리	16
				식수 및 위생 권리	3
가치와 의식	(26)			인권실태 평가	10
				인권 인식과 교육	16
합계					460

□ 2021년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거버넌스	(43)	평등권	(7)	정치참여의 평등	7
		시민·정치적 권리	(36)	집회의 자유	4
				결사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2
				양심의 자유	1
				종교의 자유	1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22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2
				구제 및 면책 권리	3
사법정의	(79)	시민·정치적 권리	(79)	안전할 권리	45
				사생활 보호 권리	11
				공정한 재판 권리	5
				사법적 구제 권리	7
				임의 체포와 구금	11
물질적 생활수준	(2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7)	사회안전망 권리	18
				인권과 빈곤	9
주거와 교통	(36)	시민·정치적 권리	(11)	거주 및 이동의 자유	1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5)	적절한 주거 권리	25
가족	(10)	시민·정치적 권리	(10)	가정폭력	10
노동	(77)	평등권	(32)	고용에서의 평등	20
				노동조건의 평등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5)	일할 권리	11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30
				노사관계 권리	4
건강	(69)	평등권	(7)	보건서비스의 평등	7
		시민·정치적 권리	(12)	생명권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50)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18
				적절한 식생활 권리	7
				의료 접근권	18
				모성 및 아동 보호	7
교육	(36)	평등권	(5)	교육기회의 평등	5
		시민·정치적 권리	(8)	교육선택의 자유	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3)	교육받을 권리	23
문화미디어·정보	(51)	평등권	(31)	다양성 존중	31
		시민·정치적 권리	(1)	표현의 자유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9)	문화적 생활 권리	17
				정보 접근권	2
환경	(2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0)	쾌적한 환경 권리	17
				식수 및 위생 권리	3
가치와 의식	(26)			인권실태 평가	9
				인권 인식과 교육	17
합계					474

□ 2022년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시민권과 참여	(45)	평등권	(8)	정치참여의 평등	8
		시민·정치적 권리	(37)	집회의 자유	4
				결사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2
				양심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1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22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2
				구제 및 면책 권리	3
사법정의	(79)	시민·정치적 권리	(79)	안전할 권리	45
				사생활 보호 권리	11
				공정한 재판 권리	5
				사법적 구제 권리	7
				임의 체포와 구금	11
생존권과 빈곤	(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사회안전망 권리	14
				인권과 빈곤	8
주거와 교통	(35)	시민·정치적 권리	(11)	거주 및 이동의 자유	1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4)	적절한 주거 권리	24
가족	(10)	시민·정치적 권리	(10)	가정폭력	10
노동	(76)	평등권	(32)	고용에서의 평등	20
				노동조건의 평등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4)	일할 권리	10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30
				노사관계 권리	4
건강과 보건	(70)	평등권	(6)	보건서비스의 평등	6
		시민·정치적 권리	(13)	생명권	1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51)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18
				적절한 식생활 권리	7
				의료 접근권	19
				모성 및 아동 보호	7
교육	(34)	평등권	(5)	교육기회의 평등	5
		시민·정치적 권리	(7)	교육선택의 자유	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교육받을 권리	22
문화미디어·정보	(50)	평등권	(31)	다양성 존중	31
		시민·정치적 권리	(1)	표현의 자유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8)	문화적 생활 권리	16
				정보 접근권	2
환경과 생태	(1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9)	쾌적한 환경 권리	16
				식수 및 위생 권리	3
가치와 의식	(27)			인권실태 평가	9
				인권 인식과 교육	18
합계					467

□ 2023년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시민권과 참여	(45)	평등권	(8)	정치참여의 평등	8
		시민·정치적 권리	(37)	집회의 자유	4
				결사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2
				양심의 자유	1
				종교의 자유	2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22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2
				구제 및 면책 권리	3
사법정의	(77)	시민·정치적 권리	(77)	안전할 권리	45
				사생활 보호 권리	10
				공정한 재판 권리	5
				사법적 구제 권리	7
				임의 체포와 구금	10
생존권과 빈곤	(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사회안전망 권리	14
				인권과 빈곤	8
주거와 교통	(34)	시민·정치적 권리	(11)	거주 및 이동의 자유	1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3)	적절한 주거 권리	23
가족	(10)	시민·정치적 권리	(10)	가정폭력	10
노동	(78)	평등권	(34)	고용에서의 평등	20
				노동조건의 평등	1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4)	일할 권리	10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30
				노사관계 권리	4
건강과 보건	(69)	평등권	(6)	보건서비스의 평등	6
		시민·정치적 권리	(13)	생명권	1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50)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17
				적절한 식생활 권리	7
				의료 접근권	19
				모성 및 아동 보호	7
교육	(34)	평등권	(5)	교육기회의 평등	5
		시민·정치적 권리	(7)	교육선택의 자유	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교육받을 권리	22
문화미디어·정보	(54)	평등권	(35)	다양성 존중	35
		시민·정치적 권리	(1)	표현의 자유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8)	문화적 생활 권리	16
				정보 접근권	2
환경과 생태	(1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8)	쾌적한 환경 권리	15
				식수 및 위생 권리	3
가치와 의식	(27)			인권실태 평가	9
				인권 인식과 교육	18
합계					468

□ 2024년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시민권과 참여	(44)	평등권	(7)	정치참여의 평등	7
		시민·정치적 권리	(37)	집회의 자유	4
				결사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2
				양심의 자유	1
				종교의 자유	2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22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2
				구제 및 면책 권리	3
사법정의	(78)	시민·정치적 권리	(78)	안전할 권리	44
				사생활 보호 권리	12
				공정한 재판 권리	5
				사법적 구제 권리	7
				임의 체포와 구금	10
생존권과 빈곤	(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사회안전망 권리	14
				인권과 빈곤	8
주거와 교통	(34)	시민·정치적 권리	(11)	거주 및 이동의 자유	1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3)	적절한 주거 권리	23
가족	(11)	시민·정치적 권리	(11)	가정폭력	11
노동	(78)	평등권	(34)	고용에서의 평등	20
				노동조건의 평등	1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4)	일할 권리	10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30
				노사관계 권리	4
건강과 보건	(70)	평등권	(6)	보건서비스의 평등	6
		시민·정치적 권리	(15)	생명권	1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9)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17
				적절한 식생활 권리	6
				의료 접근권	19
				모성 및 아동 보호	7
교육	(35)	평등권	(5)	교육기회의 평등	5
		시민·정치적 권리	(8)	교육선택의 자유	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교육받을 권리	22
문화미디어·정보	(54)	평등권	(35)	다양성 존중	35
		시민·정치적 권리	(1)	표현의 자유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8)	문화적 생활 권리	16
				정보 접근권	2
환경과 생태	(1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8)	쾌적한 환경 권리	15
				식수 및 위생 권리	3
가치와 의식	(28)			인권실태 평가	10
				인권 인식과 교육	18
합계					472

□ 2025년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시민권과 참여	(44)	평등권	(7)	정치참여의 평등	7
		시민·정치적 권리	(37)	집회의 자유	4
				결사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2
				양심의 자유	1
				종교의 자유	2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22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2
				구제 및 면책 권리	3
사법정의	(79)	시민·정치적 권리	(79)	안전할 권리	44
				사생활 보호 권리	13
				공정한 재판 권리	5
				사법적 구제 권리	7
				임의 체포와 구금	10
생존권과 빈곤	(2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1)	사회안전망 권리	14
				인권과 빈곤	7
주거와 교통	(33)	시민·정치적 권리	(10)	거주 및 이동의 자유	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3)	적절한 주거 권리	23
가족	(11)	시민·정치적 권리	(11)	가정폭력	11
노동	(78)	평등권	(34)	고용에서의 평등	20
				노동조건의 평등	1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4)	일할 권리	10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30
				노사관계 권리	4
건강과 보건	(71)	평등권	(6)	보건서비스의 평등	6
		시민·정치적 권리	(15)	생명권	1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50)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17
				적절한 식생활 권리	6
				의료 접근권	20
				모성 및 아동 보호	7
교육	(35)	평등권	(5)	교육기회의 평등	5
		시민·정치적 권리	(8)	교육선택의 자유	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교육받을 권리	22
문화미디어·정보	(57)	평등권	(38)	다양성 존중	38
		시민·정치적 권리	(1)	표현의 자유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8)	문화적 생활 권리	16
				정보 접근권	2
환경과 생태	(1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8)	쾌적한 환경 권리	15
				식수 및 위생 권리	3
가치와 의식	(28)			인권실태 평가	10
				인권 인식과 교육	18
합계					475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